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52
----------	-------

발의연월일 : 2026. 3. 10.

발 의 자 : 박성훈 · 이현승 · 김성원
김승수 · 박충권 · 김위상
서지영 · 김기웅 · 고동진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농업인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유 지원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여건 속에서 인지세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 경감은 영세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

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을 “제19호는”으로 한다.

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 ----- ----- ----- ----- ----- ----- ----- ----- ----- ----- ----- ----- -----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 ㉔ (생략)	② ~ ㉔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u><신설></u> 3. <u>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u> 4. 5. (생략)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략)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2. (생략) ⑪ (생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u> 3. <u>제19호는</u>----- ----- ---. 4. 5.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u>2029년 12월 31일</u>----- -----. 1. 2.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	---